

##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, 고용보험법 제70조, 고용보험법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공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. 30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

1. 건 명: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,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21조,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4. 2. 1. ~ 2024. 2. 15.(15일간)
5. 문의사항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상록 (Tel. 031-231-78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## 공시 송달자명단

( 공고기간 : 2024. 2. 1. ~ 2024. 2. 15. )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
				명칭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이0현	93.11.6.	경기 수원시 (이하 생략)	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결정	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 가능하나 지원자격 미달	-반환 기간 (2022.11.28.~2023.8.27.) 반환액: 10,125,000원 -부지급 기간 (2023.8.28.~2023.9.27.)	‘24.1.10. 등 총 2회 등기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.